[별표 제37호 서식] 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참가자 用)

(※)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앞면)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참가자용)

접수번호		상담자	

※성 명	나새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801225 - 2000000

사 진 (생략가능)

주 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연락처	전화번호	(043) 744 - 1234	※휴대전화 010 - 1234 - 5678
	e-mail 주소	abc111 @ naver.com	

학교명 →

이력사항					
학력	대(고등)학교 학과 년		자격면허	1	운전면허 2종 보통
	졸업✓ 재학□ 휴학□ 중퇴□ 검정고시□ 기타( )□			2	요양보호사
			외국어 능 력	1.	2.
				상 중 하	상 중 하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	※현재 취업 사실 여부	전산 능력	문서작성(한글) □ 엑셀 □ 인터넷 □	
	여	여		기타( )	

	사업체명(최근순)	직무 내용(직책)	근무 기간(연, 월)	고용 형태(고용보험 가입 여부)
1	가나다 기업	생산직	2017.01~2018.12	계약직(여)
2				
3				

희망 직종 및 직무 내용	1	
	2	
	3	

자기소개	
확인사항	○ 인턴 제외 범위에 대해(인턴희망기업 기취업(새일센터와 전혀 관계없이 채용이 확정되어있던 경우 등)자, 인턴 희망기업 3개월 이상 현장연수자, 인턴본인귀책으로 새일여성인턴 약정해지된 자, 당해연도 재참여자 등) 알고 있음 ○ 사업의 내용(기업체 지원 80만원×3개월 / 취업장려금 : 인턴 60만원)을 알고 있음

위와 같이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여 기간 중 제 규칙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새일센터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인턴 입사일 → 2020 년 월 일

신청인 나 새 일 (인)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인턴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만족도 조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고용보험가입여부, 취업사실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해당정보 사용시	참여자 선정 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학력, 자격면허, 외국어능력, 전산능력	참여자 선정 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 인턴(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및 취업취약계층항목(본인)의 보유기간 : 준영구

□ 수집방법 : e새일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관리(일모아시스템으로 데이터 연계)

□ 인턴십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해당정보 사용시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나새일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나새일

인턴 입사일 → 2020 년 월 일

영동여성새로일기센터장 귀하

[별표 제37-1호 서식] 인턴 선발시 확인 양식(예시)

인턴 선발시 확인 기준 (종사자 OX / 내부용)

인턴 선발시 확인사항	종사자(OX)
○ 인턴은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음 – 인턴지원금은 (기업체)에 240만원 지원, 취업장려금은 고용유지 후 3개월 시점에 인턴에게 지급됨 * 시간제 인턴지원금은 (기업체)에 180만원 지원	O
○ 인턴은 취업의사가 확실하며, 인턴으로 연계 받으려는 기업에 3개월 이상 현장 실습이나 교육을 받거나 근무하지 않았음	O
○ 인턴은 동사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바 없거나(회사부적응 제외),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근무가 해지된 적은 있으나, 1개월 미만 근무중에 해지되었음(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X
○ 동년도에 인턴으로 취업지원 받은바 없음	O
○ 인턴은 취업의사가 확실하며,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새일센터의 알선과 관계없이 기채용되지 않았음	O
○ 인턴은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우선선발대상자가 됨(체크)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인턴은 외국인이 아니고 결혼이민여성임	X
○ 인턴은 사업주(기업대표)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가 아님	O

[별표 제38호 서식] 여성인턴 지원 약정서

여성인턴 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 영동새일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가나다기업(이하 "을"이라 한다), 나새일(인턴, 이하 "병"이라 한다)은 『인턴(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인턴 지원 내용) 인턴 지원 약정시 "갑"은 "을"과 "병"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인턴 채용 한도 (　　%)	지원 내용
명	명	인턴 기간(3개월) 동안 1인당 월 80만원(총 240만원)씩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 시간제 인턴 지원금은 월 60만원(총 180만원)씩 지원

주) 상시근로자 수는 당해연도 최초 인턴 협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병"의 근무 장소(외근 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약정 임금 등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인턴(근로)계약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개월)
2. 근무 장소 : ○○　內
3. 인턴 소속 및 직책 :
4. 업무 내용 :
5. 근로 시간 : *00시 00분부터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 ~ 15시 00분)*
   ※ 매일(월~금) - 시간씩 연장 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6. 근무일/휴일 : 요일 ~ 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7. 휴가 :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8. 약정 임금 : 월(일, 시간)급 _____ 원 ※2020년 최저임금기준(주40시간): 1,795,310원
   - 약정 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 _____원, ○○○ _____원, ○○○ _____원
   - 임금 계산 기간 : 매월 _____일부터 _____일까지
   - 임금 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인턴 개인 예금통장에 입금(○)

※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병"과 상호합의로 인턴 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인턴 시행 지침에 반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인턴약정서는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턴 서류 작성·비치) "을"은 인턴 관련 참가 신청서, 출근부, 만족도 조사지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비치하고, 그 내용을 인턴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인턴 채용 기업의 협력 의무) "갑"은 인턴제 지침에 의거하여 "을"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정부 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동 약정서에 따라 인턴 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인턴 근무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여성인턴 출근부 사본, 기업체 통장 사본, 인턴 급여 이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과 “병” 간의 인턴 약정이 해지되거나, “병”이 중도에 인턴 근무를 포기한 경우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④ “갑”은 “병”이 인턴 기간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병”에게 인턴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병”의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3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근로 계약서, 전환 후 3개월분 급여이체 관련 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턴 취업장려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⑦ “갑”은 “을” 또는 “병”이 유급휴업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약정된 시기까지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요건을 충족할때까지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조건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준수 및 제재) ① “을”은 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체 협조 사항 및 확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인턴 지원을 제한한다.
② “을”이 인턴 지원 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 지원 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거나, 인턴 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을”은 “병”의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 후 연봉이나 월 급여가 새일센터 진행 시점의 급여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 지시, 경고, 협약 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은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도의 반환명령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을”이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경우 “갑”의 자기부담금으로 인턴지원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인턴 종료 시까지 동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인턴 중도 포기 등 통보) “을”은 인턴 기간 종료 전에 “병”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 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턴 새일 역량교육 참여) ① “갑”은 인턴 참여자를 새일 역량교육생 선발 시 우선 선발

할 수 있으며, 인턴시작 전 새일 역량교육 불가 시 인턴 중이라도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이때 "을"은 "병"이 새일 역량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병"의 교육 참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 참석을 요구하되, 불이행하는 경우 인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훈련 참여 허용 및 중복 수혜 방지) ① "을"은 인턴이 근무 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 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 참가의 허용 여부는 "을"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 "을"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 휴가 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 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을"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상용직 또는 정규직 채용 전환) "을"은 인턴 채용 종료 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병"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제13조(점검·평가 등 조치) "갑"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턴 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원금 지원 중단 및 신규 인턴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며, 본 약정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인턴 입사일 → 2020 년 월 일

(갑)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인)

(을) 가나다기업 대표 홍길동 (인)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병) 나새일 (인) ←서명가능
생년월일 : 1980.12.25
주 소 : 충북 영동군 ~

[별표 제45호 서식] 인턴 제재부가금 관련 확인서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관련 확인사항(기업체용) <예시>

<앞면>

상기 사업장은 「인턴(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제재부과금*부과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체크 필수

* 뒷면 참조

확인사항	사업주 확인 (O X)
①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에 해당하거나 상시근로자수 1인~5인미만 기업으로서 업종확인서 또는 센터장 확인서 또는 시도별 우수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했음 * 상시근로자수 1인~5인미만인 경우 X로 표시하고 증빙 첨부	
② 지침상 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뒷면)	
③ (새일여성인턴 최초 연계시) 1개월 내 고용조정에 의한 직원의 인위적 감원이 없었음	
④ (새일여성인턴 연계 실적 있는 경우)1년 내에 가장 최근의 새일여성인턴채용시점부터 종료 후 1년 시점까지 인위적 감원한 이력이 없음	
⑤ 3년 이내에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턴 채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음	
⑥ 임금체불 등 인턴협약을 계속하기 명백히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일여성인턴사업 내에 연계 제외기업으로서 고지, 지원금이 기업에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	
⑦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⑧ 기업체는 새일센터에서 새일여성인턴 연계와 관련하여 현장방문과 서류확인을 요청할시 상시근로자수, 임금지급대장, 출근 기록부 확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	

위와 같이 여성인턴제 참가를 희망하며, 기재내용 및 확인사항의 내용대로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턴 입사일 → 년 월 일

신청인 가나다기업

대표 홍 길 동 직인 ← 회사직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정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뒷면>

* 제외 대상 사업장
- 취약계층여성이 아닌 경우,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유치원 보육교사 인턴사업 연계금지

① 소비·향락업체*(단람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특별법」 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 또는 동일 기업체의 근무장소 변경은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파견 근로자 포함)시키는 경우 포함
② 파견직 근로자(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③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단,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가입, 정규직과 동일대우, 최저임금 120%이상 요건 충할 시 지원가능
④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⑤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예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⑦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⑧ 특정기간 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인턴 최초 연계 기업)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1개월 이전까지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턴 연계 기업) 인턴연계시점부터 인턴 종료시점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턴 종료 기업)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위적 감원시점 이후부터 1년간 추가연계를 금지하고 인위적 감원시기 이전에 기 연계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체불 등 협약의무 해태의 사유를 들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인위적 감원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 같은 업종 여부는 상관없이 일률 적용
⑨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⑩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⑪ 기타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재 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